

의안번호	2217609
의 퇴 인	송언석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1.
추 계 번호	26E151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가상자산 양도·대여소득에 대한 과세 폐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(기타소득)	○ 기타소득 대상에서 ‘가상자산소득’ 삭제
2	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(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)	○ 가상자산소득 세액계산 방식 삭제 － 기본공제액: 250만원, 분리과세 세율: 20%
3	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(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)	○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‘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부터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금액’을 삭제
4	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12항 및 제16항(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)	○ 비거주자에게 ‘가상자산소득’을 지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삭제 등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(기타소득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(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(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12항 및 제16항(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로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가상자산 소득 과세 개요(2027년 과세 예정)
 - (과세대상) 가상자산을 양도·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 - (소득구분) 기타소득
 - (기본공제) 250만원
 - (세율) 거주자: 20%(분리과세)
 - 비거주자: 양도가액의 10%, 양도차익의 20% 중 작은 금액
 - (신고·납부) 거주자: 차년도 5월 기타소득으로 신고·납부
 - 비거주자: 가상자산사업자가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 납부
-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양도·대여소득 과세가 시행 되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규모를 전망하여야 하지만,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함
 -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, 이후 세차례 시행이 유예됨
 - (1차 유예) 2022 → 2023년, (2차 유예) 2023 → 2025년, (3차 유예) 2025 → 2027년
 - 현 시점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및 양도금액, 대상인원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므로, 가상자산소득 과세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